# 여신거래약정서

여신실행 방법

(수) <b>[우디금융시축은앵]</b> 귀중					
본 인: 생년월일: 주 소:	(인)				
"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 제1조 (거래조건) ①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	행(이하 "저축은행"이라 합니다)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분약관"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 니다.(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저축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"□"내에				
"■"표시합니다.)<개정 2014 	4. 8. 20., 2016. 12. 19., 2018. 1. 31., 2019. 12. 5.>				
여신과목 (여신종류)	□ 일반자금대출 □ 종합통장대출 □ 예적금담보대출				
거래 구분	□ 한도거래 □ 개별거래				
여신(한도) 금액	금 원				
계좌번호					
여신 개시일	년 월 일 □ 저축은행 승인일				
여신기간 만료일	년 월 일 (1회전 기간 개월) 🗆 여신일로부터 5년				
이자율 등	□ 고정금리(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3조 제2항 제1호 선택)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( )%				
	□ 변동금리 (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) □ 기준금리( )+연( )% □ 금리변동주기( )개월 □ 지연배상금률 (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) 최고 연(1 9. 71)%				
이자 및 지연배상금률 계산방법	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				
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	대출이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. 단,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(3)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. □ 기한 전 상환대출금액 × (2.00) % × (대출잔여일수 ÷ 대출기간) □ 해당 없음				

□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.

	□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저축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. □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.				
상환방법	□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 □ 매 ( )일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. □ 매월 ( )일과 ( )일에 분할 상환합니다. □ (1)개월 마다 대출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. □ 자유로이 상환하되,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,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				
	□ 분할 상환하는 경우 여신개시일로부터 ( )년 ( )개월 ( )일 동안 거치합니다.				
	※ 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
이자지급시기 및 방법	□ 매 ( )월 마다 대출해당일에 지급합니다. □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. □ 담보 예금 등의 이자지급일 또는 이자원가일에 지급합니다. □ 어음할인일에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. □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. ※ 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
부금 등의 납입특약	부금 등의 적립금을 약정에 따라 계속 납입합니다. 다만, 그 적립금의 납입을 ( )개월 동안 유예합니다.				
상계특약	계약금액내대출에 대하여 관련 부금의 적립금이 계속하여 4월이상 연체되는 경우는 여신기간만료일 이전이라도 저축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관련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.				

- ② 제1항의 거래방식에 있어서 한도거래라 함은 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내에서 대출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기로 하는 것을 개별거래라 함은 대출한 금액을 여신기간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거나 거래기한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③ 한도거래의 경우는 제1항의 여신기간만료일 이내에서 1회전기간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2조 (지연배상금)

- ① 이자·분할상환금·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, 기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 <개정 2016. 12. 19>
-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(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 무 발생 포함)에는, 여신기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개정 2016. 12. 19>
- ③ 계약금액내대출의 경우 상계전일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, 상계후에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개정 2016. 12. 19>
- ④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것은 제1조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로 하며,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 되지 못한 이자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결산 기준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개정 2016. 12. 19, 2019. 3. 6>

# 제2조 2 (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)

- ① 본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초 약정한 대출기일(기한연장된경우 연장된 기일포함. 이하 같음) 이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를 저축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② 대출잔여일수 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- 1. '대출잔여일수'는 상환방법에 관계없이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기한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- 2. '대출기간'은 대출실행방법에 관계없이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,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약정기일로 적용합니다.
- ③ 기한전상환수수료는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최대3년(기한연장 포함)이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합니다. [본조신설 2019. 12. 5.]

### 제3조 (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)

- ①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,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후에 확정되며, 확정방법은 분할 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증빙자료에 의합니다.
- ② 계약금액내대출과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, 저축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### 제4조 (감액·정지)

- 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, 국가경제·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, 저축은행 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(한도)금액을 줄이거나, 거래기 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한도 초과된 당일 갚기로 합니다. <개정 2016. 12. 19>
-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곧 감액 ·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.

#### 제5조 (종합통장대출에 대한 약정)

-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(이하 "모계좌"라 합니다)에 입금된 자금(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,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저축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)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.
-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,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③ <삭제> <2019. 3. 6>
- ④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1조의 한도금액 이내에서만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,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되지 못한 이자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발생한 당일 갚기로 합니다.<개정 2016. 12. 19., 2019. 3. 6>
- ⑤ 대출의 이자계산은 매일의 마감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다만, 당일중의 최고잔액이 당일중의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보다 클 경우에는 개시잔액과 마감잔액 중 큰 금액을 최고잔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액을 마감잔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연체좌에 대하여는 매일의 최고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⑥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1회전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저축은행은 1회전기간 만료일을 통지하고 연장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. 이 경우 본인이 1회전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저축은행도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신기간만료일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직전의 1회전기간만큼 거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. <개정 2016. 8. 11>

#### 제6조 (한도약정 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)

한도거래의 경우 제1조의 여신(한도)금액을 설정하거나 여신(한 도)금액 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.<개정 2017. 8. 11>

#### 제7조 (인지세의 부담)

-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(또는 설정자)가 각각 50%씩 부담합니다.<개정 2011. 8. 1>
- ② <삭 제> <2011.8.1>
- ③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 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. <신설 2016.12.19>

# 제8조 (담보·보험)

본인은 저축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,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·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,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저축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.

# 제9조 (담보권 설정)

-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저축은행 앞으로 그 증서(통장)의 인도를 마칩니다.
-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·수익권(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)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·수익의 수익권, 특별장려금,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.
- ③ 제1항의 질권은 그 목적인 예금 등이 기한연장·개서·갱신·분할·병합·증액·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.
- ④ 저축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.

### ■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

종별	증서(계좌) 번호	명의인	금액(계약액)	까지 입금누계액	증서일자	지급기일

#### 제10조 (상환자력 유지의무 등)

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. 그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.

구분	20.	20.	20.	20.	20.
부채비율					
자기자본비율					
( )비율					
( )비율					

-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저축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.
- 1. 합병,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 · 임대
- 2.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

- 3.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
- 4.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
- 5. 기업구조 개선 작업(Work Out)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본인은 저축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.
- 1.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
- 2. 지배주주의 출자
- 3.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저축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

### 제11조 (자료의 제출 등)

본인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 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저축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

- 1. 매분기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, 합계잔액시산표,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<개정 2017.8.11>
- 2. 매반기 : 반기결산보고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, 합계잔액시산표,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<개정 2017.8.11>
- 3. 매년: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(결산재무제표), 연결재무제표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주주명부, 정관,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, 사업계획서, 추정재무제표(3개년), 주요거래처현황,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(KS, ISO, 특허 권등), 노사분규확인서,기타 제품설명서, 동업계 참고자료 등
- 4. 수 시 : 합계잔액시산표, 자금용도확인서류 등<개정 2017.8.11>

### 제12조 (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조치)

- ① 본인은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 및 그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(해당여 신을 즉시 상환)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.
- ②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(3) 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.
- ③ 용도외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, 2 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(신규여신 취급이제 한)됩니다. [본조신설 2018. 11. 26]

## 제13조 (기타 특약사항) <개정 2018.11.26>

본인	(인)

### 제14조 (입금 의뢰) <개정 2018.11.26>

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다음과 같이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. 이 경우 입금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합니다. [본조신설 2016. 12. 19]

금융기관명	예금주	
계좌번호		
입금금액		

본인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, 대출상품설명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.<개정 2008. 1. 14., 2016. 12. 19>

본인 (인)